

제25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2024. 4. 26.

사 회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326호로 2024년 4월 9일 유승용 의원 외 3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024년 4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비장애인보다 정보접근성이 낮은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정보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당부서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내 장애인의 복리증진과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나. 실태조사 및 실행계획 수립, 시행(안 제4조~제5조)
- 다. 추진사업, 업무의위탁 등, 홍보(안 제6조~제8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능정보화기본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입법예고(2024. 4. 9. ~ 4. 13.)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비장애인보다 정보접근성이 낮은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정보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당부서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내 장애인의 복리증진과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제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이고 8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 안 제2조제3호에서는 “정보”, “정보화”, “정보격차” 등 정보와 관련된 용어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르도록 하였고,
- 안 제3조에서는 법 제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며,
-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실태조사에 기반한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안 제5조에서는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실행계획의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각 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 안 제7조에서는 전문적·효율적으로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는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 및 보호자가 구 정책 및 추진사업에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규정함.

○ 검토결과

- 현대사회는 제4차 1)산업혁명 시대로,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유용한 정보를 선택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곧 경쟁력과 직결되지만,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은 신체 장애 등의 이유로 비장애인에 비해 정보 접근성 및 활용 능력이 떨어짐.
- 이에 따라 서울시 타 자치구 15개에서는 장애인 등의 정보 취약계층과 비장애인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음.

서울시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		
	자치구	조례명
1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2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 조례
3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4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5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6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7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8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9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10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11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12	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13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14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15	중랑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및 정보

1)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가상현실(VR)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

활용능력을 향상시켜 장애인의 자립, 사회적 연결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 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참고 자료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4. “지능정보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 가.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추론·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
 - 나. 데이터(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분석·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
 - 다. 물건 상호간 또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물건을 이용·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 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
 - 마. 무선 또는 유·무선이 결합된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
 -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5.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6.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경제, 사회·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7. “지능정보서비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

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다.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8.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9.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 및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서비스 등 모든 것이 언제 어디서나 연결[이하 “초연결”(超連結)이라 한다]되어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0.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이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과 이에 접속되어 이용되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설비,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등을 말한다.

11. “정보문화”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사회구성원에 의하여 형성되는 행동방식·가치관·규범 등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12. “지능정보사회윤리”란 지능정보기술의 개발,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이용 및 지능정보화의 추진 과정에서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개인 또는 사회 구성원이 지켜야 하는 가치판단 기준을 말한다.

13. “정보격차”란 사회적·경제적·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14.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15. “정보보호”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변조·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수단(이하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1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기관 및 단체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인간의 존엄·가치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능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 증진을 추구함으로써 경제 성장의 혜택과 기회가 폭넓게 공유되도록 노력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역기능을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과 개인정보의 보호, 사생활의 자유·비밀을 보장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시책의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지원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활용이 인류의 공동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고도화 및 활용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이용할 때 안전성·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로 발생·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인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6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②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지능정보제품”이라 한다)를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고령자 등이 별도의 보조기구 없이 지능정보제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능정보제품이 보조기구와 호환될 수 있게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종류·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⑦ 제4항에 따른 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기준, 검증절차, 구매촉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지원)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에게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능정보제품을 개발·생산하는 사업자
2. 장애인·고령자·농어민 또는 저소득자 등을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
3. 제1항에 따른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

③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③ 정부는 정보격차해소교육이나 정보격차해소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지무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 및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장애인복지법

제20조(교육)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령·능력·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전문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④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그 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에 거부하는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모든 교육기관은 교육 대상인 장애인의 입학과 수학(修學) 등에 편리하도록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맞추어 시설을 정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정보에의 접근)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에게 뉴스와 국가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폐쇄자막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

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6. 2. 3., 2017. 12. 19.>

- ④제2항과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와 민간 행사 주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시각 및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 음성도서, 점자정보단말기 및 무지점자단말기 등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개발·보급하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파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 ⑥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 기기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